

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승미 의원 (대표) 발의)

의안 번호	830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8월 6일

발 의 자 : 이승미 의원 (1명)

찬 성 자 : 우형찬, 김상훈, 오현정, 홍성룡,
전병주, 권영희, 이정인, 채유미,
이준형, 고병국, 추승우, 송아량,
이은주 의원 (13명)

1. 제안이유

반려동물인구 천만시대를 맞아 동물복지에 대한 시민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일부 동물원에서의 동물 습성에 반하는 행위 강요 및 열악한 사육환경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」의 적용범위를 확대 및 동물원의 동물 관리 및 보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실질적인 동물복지를 구현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가. 동물원 동물 관리 및 보호에 따른 준수사항(관람·체험·공연 등)을 규정하고 시장이 규정 준수에 필요한 조취를 취할 수 있도록 함
(안 제27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동물보호법」 및 「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- 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.

제27조(동물원의 동물 복지 등) ① 동물원의 동물을 사육·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동물원의 동물이 야생에서와 같이 자연스러운 행동을 자유롭게 발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는 등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도록 할 것
2. 동물원의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않도록 먹이를 충분히 제공하고, 불필요한 고통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것
3. 시민의 동물 관람·공연 등을 위하여 동물원 동물을 훈련시킬 때에는 생명존중을 고려하여 실시하도록 하고, 동물 본래의 습성에 반하는 공연 및 이를 위한 훈련은 실시하지 않도록 할 것
4. 시민의 동물 관람·공연 등을 위하여 동물원 동물을 이동시킬 경우에는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

② 시장은 동물원에서 제1항에 따른 규정이 준수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27조(동물원의 동물 복지 등) ①</u> <u>동물원의 동물을 사육·관리 또는</u> <u>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</u> <u>을 준수하여야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동물원의 동물이 야생에서와</u> <u>같이 자연스러운 행동을 자유롭게</u> <u>발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</u> <u>을 제공하는 등 동물 본래의 습</u> <u>성을 유지하도록 할 것</u> 2. <u>동물원의 동물이 갈증 및 굶주</u> <u>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</u> <u>않도록 먹이를 충분히 제공하고,</u> <u>불필요한 고통을 받지 않도록</u> <u>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것</u> 3. <u>시민의 동물 관람·공연 등을</u> <u>위하여 동물원 동물을 훈련시킬</u> <u>때에는 생명존중을 고려하여 실</u> <u>시하도록 하고, 동물 본래의 습</u> <u>성에 반하는 공연 및 이를 위한</u> <u>훈련은 실시하지 않도록 할 것</u> 4. <u>시민의 동물 관람·공연 등을</u> <u>위하여 동물원 동물을 이동시킬</u>

경우에는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

② 시장은 동물원에서 제1항에 따른 규정이 준수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

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27조(동물원의 동물 복지 등)를 신설하는 것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, 선언적·권고적인 내용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움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(제3조제1항제2호)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 당 관 남승우

정책조사팀장 여차민

주 무 관 채소영

☎ 02-2180-7942

e-mail : liz1998@seoul.go.kr